

강릉시의회 공고 제2024-3호

「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월 29일

강릉시의회의장

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에 따라 강릉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을 조례에 반영하여 의정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의정활동비 변경(안 제2조제1항제1호)
 - 의정활동비: 110만 원→135만 원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(참조: 의회사무국 운영전문위원/☎033-640-4032)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다. 기타 의견

[보내실 곳]

- 우 편: (25522)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(홍제동) 강릉시의회 의회사무국
- 이메일: jhyoon93@korea.kr
- 팩 스: 033-640-4070

- 붙임 1.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2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. 끝.

[붙임 1]

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의정활동비: 연 16,200,000원(월 1,350,000원)
 - 가. 의정자료수집·연구비: 연 12,600,000원(월 1,050,000원)
 - 나. 보조활동비: 연 3,600,000원(월 300,000원)

부 칙

이 조례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)</p> <p>① 강릉시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 의정활동비 : 연 13,200천원 (월 1,100천원)</p> <p>2. (생략)</p> <p>② · ③ (생략)</p>	<p>제2조(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.</p> <p>1. 의정활동비: 연 16,200,000원 (월 1,350,000원)</p> <p>가. 의정자료수집 · 연구비: 연 12,600,000원(월 1,050,000원)</p> <p>나. 보조활동비: 연 3,600,000원(월 300,000원)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

관계 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40조(의원의 의정활동비 등)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.

1. 의정(議政)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(補填)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
2. ~ 3. (생략)

□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
제33조(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)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. <개정 2023. 12. 14.>

1.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: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
2. ~ 3. (생략)

② (생략)

제35조(의정비심위원회의 운영 등) ① 의정비심위원회는 그 의정비심위원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31일까지 다음 해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.

② ~ ⑨ (생략)

부칙 <제33966호, 2023. 12. 14.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의정활동비 결정 및 적용기간에 관한 특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새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34조 및 제35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정비심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 해당 의정활동비의 지급 기준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의정비심위원회가 결정한 지급 기준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의정활동비를 정한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해당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.

■ 지방자치법 시행령 [별표 5] <개정 2023. 12. 14.>

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(제33조제1항제1호 관련)

구분	의정활동비 지급범위	
	의정자료수집·연구비	보조활동비
시·도의회의원	월 1,500,000원 이내	월 500,000원 이내
시·군·자치구의회의원	월 1,200,000원 이내	월 300,000원 이내

[붙임 2]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

□ 법규명: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제·개정안 내용	의 건	비 고